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가단1242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6,800원 및 그 중 398,238원에 대하여 2021.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6,9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20. 3.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3. 8. 19. 피고 B(개명 전 F)에게 5,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39%, 연체이율 연 39%, 대출만기일은 대출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피고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6,95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피고 B이 위 대출금을 연체하자 E는 2016. 6. 23.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6. 6. 28.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21. 6. 10. 기준 위 대출채권의 잔액은 2,586,454원(= 원금 862,171원 + 이자 1,724,283원)이다.

2)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은 2013. 8. 19.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39%, 연체이율 연 39%, 대출만기일은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피고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6,95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피고 B이 위 대출금을 연체하자 E는 2016. 8. 26.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 9. 6.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21. 6. 10. 기준 위 대출채권의 잔액은 1,246,800원(= 원금 398,238원 + 이자 848,562원)이다.

나. 상속 및 등기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20. 1. 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B과 소외 I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상속지분 각 1/3).

2) 피고 D, 피고 B와 소외 I은 2020. 3. 20.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소외 I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각각 포기하고 피고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0. 3. 23. 접수 제36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위 가.항 기재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G의 피고 B, C에 대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그 이행을 구하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21. 6. 10. 기준 원리금 합계액 1,246,800원 및 그 중 원금 398,238원에 대하여 2021.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6,950,000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E와 G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한 대출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각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결국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증여하였으므로, 그러한 특별수익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상속지분이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그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진호

별지